

## 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현황 개요

## 1. 비과세·감면 총괄표

(단위: 원, %)

구 분		'24년(결산)
비과세·감면액(A)		4,267,907,060
	비과세	3,681,660,350
	감면	586,246,710
지방세 징수액(B)		32,760,031,750
비과세·감면율(A/A+B)		11.5

## 2. 기능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분 야		'24년(결산)	비중
<b>총 계</b>		4,267,907,060	100
1	일반공공행정	1,858,986,970	43.6
2	공공질서 및 안전	51,602,830	1.2
3	교육	186,944,930	4.4
4	문화 및 관광	126,103,670	3.0
5	환경보호	112,390	0.0
6	사회복지	153,956,280	3.6
7	보건	5,240,970	0.1
8	농림해양수산	174,653,320	4.1
9	산업·중소기업	5,476,490	0.1
10	수송 및 교통	170,100	0.0
11	국토 및 지역개발	30,043,900	0.7
12	과학기술	0	0.0
13	국가	1,636,104,370	38.3
14	외국	1,660,050	0.0
15	기타	36,850,790	0.9

### 3. 세목별 비과세 · 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분 야	'24년(결산)	비중
<b>총 계</b>	4,267,907,060	100
보통세	4,267,907,060	100
취득세		
등록면허세		
레저세		
지방소비세		
주민세	14,557,250	0.3
재산세	4,083,247,780	95.7
자동차세	170,102,030	4.0
지방소득세		
담배소비세		
목적세		
지역자원시설세		
지방교육세		

### 4. 비과세 ·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

(단위: 원)

감 면 유 형	'23년(결산)	'24년(결산)	증감액
농업법인에 대한 감면	32,631,110	51,883,410	19,252,300
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	1,674,796,020	1,692,571,860	17,775,840
산업단지에 대한 감면	19,580,830	29,262,460	9,681,630
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	102,738,810	111,889,900	9,151,090
종교단체 · 향교에 대한 감면	97,782,700	105,249,800	7,467,100
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	168,557,230	160,122,630	-8,434,600
장애인에 대한 감면	64,692,520	61,965,940	-2,726,580
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	7,825,430	5,240,970	-2,584,460
기타	2,020,309,880	2,049,720,090	29,410,210

## I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### 1. 일반공공행정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일반공공행정</b>		<b>합 계</b>	<b>1,858,986,970</b>
1	<b>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</b>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자동차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 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 ②) 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, 경호, 경비, 교통순찰,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1·2호)	<b>소 계</b>	<b>1,692,571,86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
		재 산 세	1,685,481,790
		자동차세	7,090,070
		지방소득세	
		지역자원시설세	
		-	
		-	
2	<b>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</b>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<b>소 계</b>	<b>2,422,060</b>
		재 산 세	2,422,060
		지역자원시설세	
		-	
3	<b>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·감면</b>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·면제(지방세법 §26② 4호, 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①, §90②)	<b>소 계</b>	<b>52,033,94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
		재 산 세	52,033,940
지역자원시설세			
4	<b>사유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비과세</b> -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3호) -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1호, §145②)	<b>소 계</b>	<b>110,541,200</b>
		등록면허세	
		재 산 세	110,541,200
		지역자원시설세	
-			
5	<b>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</b> - 지방공사·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①②) -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,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③)	<b>소 계</b>	<b>1,417,91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재 산 세	1,417,910
		-	

## 2. 공공질서 및 안전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<b>공공질서 및 안전</b>	<b>합 계</b>	<b>51,602,830</b>
6	<b>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비과세·감면</b> - 천재·지변·소실·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레저·주민·재산·자동차·지방소득·담배소비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·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④, §92① 1호, §92②·③) -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유족 주민세·자동차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④·⑤) -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(지방세법 §9⑦) - (경북)소상공인이 취득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- (양산)상업용·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- (양산)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- (남원)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,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- (조례)감염병 피해 및 복구지원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면 - (조례)천재지변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- (조례)태풍·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 감면 - (취득세 100%)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한 상속 취득	<b>소 계</b>	<b>51,602,83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레 저 세	
		주 민 세	
		재 산 세	
		자 동 차 세	51,602,830
		지 방 소 득 세	
		담 배 소 비 세	
		지 역 자 원 시 설 세	

### 3. 교육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교육</b>		<b>합 계</b>	<b>186,944,930</b>
7	<b>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</b> 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방소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	<b>소 계</b>	<b>160,122,63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150,000
		재 산 세	159,972,630
		지방소득세	
		지역자원시설세	
8	<b>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</b> -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<b>소 계</b>	<b>36,760</b>
		재 산 세	36,760
		지역자원시설세	
		-	
9	<b>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</b> 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①, §41②, §41③, §41⑤) -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·실습용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입목·선박에 대하여 취득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①, §42②) -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⑥)(폐지) -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에 대한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⑦) - 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, 재산세 50%(5년간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⑧)	<b>소 계</b>	<b>26,739,04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1,600,000
		재 산 세	2,5139,040
		-	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10	<b>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</b> -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 -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·재산세 면제,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8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②)	<b>소 계</b>	<b>46,500</b>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46,500
		-	

#### 4. 문화 및 관광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문화 및 관광</b>		<b>합 계</b>	<b>126,103,670</b>
11	<b>종교단체·향교에 대한 감면</b> - 종교행위 또는 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①, §50②, §50③, §50⑤, §50⑥) - 민법 상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5%(감염병전문병원 25%), 재산세 25%(감염병전문병원 35%),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④)	<b>소 계</b>	<b>105,249,80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8,350,000
		재 산 세	96,899,800
		지방소득세	
		지역자원시설세	
12	<b>문화·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①) - 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·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조의2) - (서울 종로구) 인사동·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- (서울) 공연장에 대한 취득·등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- (경기, 양주) 양주 장흥 문화·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재산세 감면 - (제주)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- 문화예술 공공기관, 체육진흥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의2)	<b>소 계</b>	<b>1,085,64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재 산 세	1,085,650
		지역자원시설세	
		-	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13	<b>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①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, 보호구역 내 부동산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②) - (조례)국보,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 - (서울 종로)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- (서울 성북)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- (조례)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- (조례)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	소 계	19,768,230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19,768,230
		지역자원시설세	
		-	

## 5. 환경보호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환경보호</b>		합 계	112,390
14	<b>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</b> -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8) -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(서울 서초)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- (조례)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	소 계	112,390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112,390
		지역자원시설세	
		-	

## 6. 사회복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사회복지</b>		<b>합 계</b>	<b>153,956,280</b>
15	<b>장애인에 대한 감면</b>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·자동차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 - (조례)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	<b>소 계</b>	<b>61,965,940</b>
		취 득 세	
		자동차세	61,965,940
		-	
16	<b>사회복지법인·시설·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</b> - 무료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·재산세 50% 감면, 유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·재산세 25% 감면 (조례추가50%, §22①, §22②, §22③, §22④) - (부산 금정구·광주 남구) 사회복지시설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%(법령 25%+조례 50%), 재산세 100%(법령 50%+조례 50%) -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, 사회복지법인등(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포함)에 대한 주민세 면제, §22⑤, §22⑥, §22⑦)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⑧) -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%,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4) - (제주)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등에 대한 감면 - (지방소득세 50% 천안)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- (경기)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%	<b>소 계</b>	<b>48,790,03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2,750,000
		재 산 세	46,040,030
		지방소득세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17	<b>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,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 -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140만원 한도)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2①, §22의2②) - (제주)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- (제주)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- 출산가구 주택취득의 경우 취득세 100% 감면(500만원 한도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6의5) - (경북) 다자녀가구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100% - (강원) 18세 미만 3명이상 자녀 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50%	<b>소 계</b>	<b>1,379,910</b>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1,379,910
		-	
18	<b>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</b> - 무료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양로시설,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2호)	<b>소 계</b>	<b>1,922,180</b>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1,922,180
		지역자원시설세	
19	<b>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스카우트 주관단체, 한국청소년연맹, 한국해양소년단연맹,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75% 감면,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1①) -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1②)	<b>소 계</b>	<b>261,580</b>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261,580
		지역자원시설세	
20	<b>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①)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 -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·자동차세 면제,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승용자동차 취득·자동차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④)	<b>소 계</b>	<b>20,460,46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
		재 산 세	153,910
		자동차세	20,306,550
		담배소비세	
		지역자원시설세	
-		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21	<b>임대주택에 대한 감면</b>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설임대주택 60㎡이하 취득세 면제, 60~85㎡(20호이상) 50% 감면, 매입임대주택 60㎡이하 취득세 면제, 20호이상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①·②)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적별 25%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25%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⑥)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면적별 50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3) -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4)(폐지) -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1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5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 -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4)	소 계	16,646,570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16,646,570
		지역자원시설세	
22	<b>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</b> - 대상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% 감면(225만원限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①) 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②) -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③)(폐지) -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공시가격 6억원限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의2)	소 계	2,529,610
		등록면허세	
		재 산 세	2,529,610

## 7. 보건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보건</b>		<b>합 계</b>	<b>5,240,970</b>
23	<b>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①) -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·재산세 75%(감염병전문병원 85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의2) - (경기 포천)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·주민세 면제	<b>소 계</b>	<b>5,240,97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
		재 산 세	5,240,970
		-	

## 8. 농림해양수산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농림해양수산</b>		<b>합 계</b>	<b>174,653,320</b>
24	<b>농업인에 대한 감면</b> - 자경농민의 농지·임야,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①, ②) - 도로·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③)(폐지) -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,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④) - 농기계류 및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) -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(한국농어촌공사 제외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②) - 농어업인이 영농, 가축사육, 양식,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원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세특례제한법	<b>소 계</b>	<b>7,876,45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
		재 산 세	7,876,450
		자동차세	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§106의2① 1호) - (부산·대구·인천·경기·경남)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%→50%→25% 감면 - (경기 광주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% 감면 - (제주)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% 감면 - (제주)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 - (제주)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감면		
25	<b>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</b> 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호) 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%, 재산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의2호) -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의3호) -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(환매취득 면제)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2호) -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3호) -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4호) -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5호) -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③)	소 계	2,447,180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재 산 세	2,447,180
		-	
26	<b>농업법인에 대한 감면</b> -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①) - 영농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②) -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④)(폐지)	소 계	51,883,410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재 산 세	51,883,41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27	<b>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</b> - 산림유전자원보호림·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2호)	소 계	19,190
		재산세	19,190
		-	
28	<b>어법법인에 대한 감면</b> - 어법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①) - 어법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②)(폐지)	소 계	537,190
		취득세	
		등록면허세	
		재산세	537,190
29	<b>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</b>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①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염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업 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③,§14④) -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구매·판매·보관·가공·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의3)	소 계	111,889,900
		취득세	
		등록면허세	
		주민세	
		재산세	111,889,900
		-	

## 9. 산업·중소기업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산업·중소기업</b>		<b>합 계</b>	<b>5,476,490</b>
30	<b>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%,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,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①) - '26.12.31.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4년이내(청년창업 벤처기업 5년 이내)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%, 3년간 재산세 면제,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②)	소 계	2,560,690
		취득세	
		등록면허세	
		재산세	2,560,690
		지방소득세	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③)(폐지)</li> <li>-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호)</li> <li>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%, 재산세 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의2호)</li> <li>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§119②, §120③, §121)(폐지)</li> <li>- (제주·구미) 벤처기업의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50%(법령 35%+조례 15%)</li> </ul>		
31	<b>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에 따른 석유 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,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의2)(폐지)</li> <li>-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1)(폐지)</li> <li>-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</li> <li>- (충북) 도시가스사업자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감면</li> </ul>	소 계	10,560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재 산 세	10,560
		-	
32	<b>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·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·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</li> <li>- 자동차·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①)</li> <li>-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, 중고기계장비,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,000분의 20을 감면,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③)</li> </ul>	소 계	2,905,240
		취 득 세	
		자동차세	2,905,240
		-	

## 10. 수송 및 교통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수송 및 교통</b>		<b>합 계</b>	<b>170,100</b>
33	<b>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</b> -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~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(2007.12.31.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 限)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③) - (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대전·울산)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	<b>소 계</b>	<b>170,100</b>
		자동차세	170,100
		-	-

## 11. 국토 및 지역개발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국토 및 지역개발</b>		<b>합 계</b>	<b>30,043,900</b>
34	<b>산업단지에 대한 감면</b> -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% 감면, 조성공사중 토지 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①) 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분양·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②) 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③) - 산업단지, 유지지역,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%, 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75%), 대수선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④) - 한국산업단지공단(주)이 분양·임대 및 매각 사업, 후생복지·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%, 재산세 50% 감면(수도권외 75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⑥)(폐지) -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, 재산세,	<b>소 계</b>	<b>29,262,460</b>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29,262,460
		등록면허세	
		-	-
		-	-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<p>등록면허세 중과 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단지 내 개축·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(조례)</li> <li>- 농공단지 내 휴·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조례)</li> <li>- (부산, 해운대)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</li> <li>- (광주 광산구)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</li> <li>- (대전 유성·대덕구)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</li> <li>- (강원, 동해시)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·증축시 재산세 5년간 75% 감면</li> <li>- (광역공동 수도권외)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·증축 부동산(법50%+ 조례25%)</li> <li>- (전주) 연구개발특구지역 사업시행자 분양, 임대 목적 부동산</li> <li>- (세종) 세종스마트국가산단·세종복합일반산단 사업시행자관련 부동산 재산세 공제</li> </ul>		
35	<p><b>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㎡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2)</li> </ul>	소 계	2,670
		재 산 세	2,670
		-	
36	<p><b>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①)</li> <li>-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②)</li> <li>-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③)</li> </ul>	소 계	778,770
		재 산 세	778,770
		도시계획세	
		-	

## 12. 과학기술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과학기술</b>		<b>합 계</b>	
37	<b>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박물관 또는 미술관,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의2) -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) -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의2)	<b>소 계</b>	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
		도시계획세	
		-	

## 13. 국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국 가</b>		<b>합 계</b>	<b>1,636,104,370</b>
38	<b>국가에 대한 비과세</b> - 국가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방소득세·지역자원시설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, §145① 1호) - 국가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·청소·오물수거와 도로공사, 우편·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)	<b>소 계</b>	<b>1,636,098,86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
		재 산 세	1,633,777,440
		자동차세	2,321,420
		지방소득세	
		지역자원시설세	
39	<b>국가가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</b> 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<b>소 계</b>	<b>5,510</b>
		재 산 세	5,510
		지역자원시설세	
		-	

## 14. 외국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외 국</b>		<b>합 계</b>	<b>1,660,050</b>
40	<b>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</b> -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·자동차·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77① 2호, §90, §126 3호)	<b>소 계</b>	<b>1,660,050</b>
		주 민 세	
		자동차세	1,660,050
		지방소득세	

## 15. 기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<b>기 타</b>		<b>합 계</b>	<b>36,850,790</b>
41	<b>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</b> 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⑤, §109③ 3호, §145②) -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③ 5호, §145②)	<b>소 계</b>	<b>6,964,530</b>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6,964,530
		지역자원시설세	
42	<b>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·감면</b> -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① 6호) - 행정구역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·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·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2호) -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, 분할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④) 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②) 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26② 2·4호) 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	<b>소 계</b>	<b>20,133,420</b>
		취 득 세	
		등록면허세	
		자동차세	20,133,420
		-	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24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</li> <li>-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</li> <li>-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</li> <li>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①)</li> </ul>		
43	<b>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①)</li> <li>- 별정우체국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·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②)</li> </ul>	소 계	1,138,380
		취 득 세	
		주 민 세	
		재 산 세	1,138,380
		지역자원시설세	
	-		
44	<b>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1호, §87② 1호)</li> <li>-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,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,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2호, §87② 2호)</li> </ul>	소 계	152,580
		취 득 세	
		재 산 세	152,580
		-	
45	<b>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①)</li> <li>-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)</li> </ul>	소 계	574,180
		취 득 세	
		주 민 세	
		재 산 세	574,180
	-		
46	<b>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의2)</li> </ul>	소 계	7,887,700
		등록면허세	
		주 민 세	1,707,250
		재 산 세	4,234,040
		자동차세	1,946,410
		지역자원시설세	
		지방교육세	

